

2023년 건축·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3. 5. 1. 입찰공고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액)	[일반관리비]		[이윤] (노+경+일) x 율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- 전기·통신· 소방·기타		종합건설업	전문건설업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2	12.2	5.8	5.8	5억 미만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안전관리비 대상액 ^{※)}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
	7~12개월 (365일)	12.2	12.2	5.7	5.7				건축공사	0.07	비계·구조물해체공사	0.68		50억 미만	일반건설공사(갑)	2.93	
	13~36개월 (1095일)	12.0	12.0	6.0	6.0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3.09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7	11.7	5.8	5.8				중건설공사	3.43							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7	11.7	5.8	5.8	5억 - 30억 미만	5.5	15.0	산업·설비공사	0.16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종)	0.32	50억 ~ 500억 미만		철도·궤도신설공사	2.45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5.8	5.8									특수및기타건설공사	1.85		
	13~36개월 (1095일)	11.5	11.5	6.1	6.1				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	0.16	일반건설공사(갑)	1.86		5,349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2	11.2	5.9	5.9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1.99		5,499			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5	11.5	5.9	5.9	50억 - 100억 미만	5.0	12.0					50억 이상	중건설공사	2.35	5,400	
	7~12개월 (365일)	11.5	11.5	5.8	5.8								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57	4,411	
	13~36개월 (1095일)	11.3	11.3	6.1	6.1				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	0.10	특수및기타건설공사	1.20		3,250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0	11.0	5.9	5.9					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				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1	11.1	5.6	5.6	300억 - 1000억 미만	5.0	4.5	10.0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			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	일반건설공사(을)	2.10	
	7~12개월 (365일)	11.1	11.1	5.6	5.6					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				중건설공사	2.44	
	13~36개월 (1095일)	10.9	10.9	5.9	5.9					50억 이상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66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0.5	10.5	5.6	5.6							특수및기타건설공사	1.27	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차료		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		1000억 이상		4.5	9.0										
[산재보험료]						[환경보전비]		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			
(노) x 3.7		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1-95호(2021. 12. 29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						구분				공사규모(추정가액)				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합한 금액			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			50억 미만				* 건설업의 분류			
					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			50억 이상 - 100억 미만				- [일반건설공사(갑)] 건축건설, 교량건설, 도로신설, 철도·궤도의 보수복구, 기설로면에 레 부설하는 공사			
[고용보험료]						지하철			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				- [일반건설공사(을)] 기계장치공사, 석도건설공사			
(노) x 율						철도				300억 이상 중상·중형제(토목 및 산업설비)				- [중건설공사] 고재방(땀)높이20m 이상의 재방, 방파제, 안벽, 수력발전시설, 터널(지하10	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			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			300억 이상 중상·중형제(건축)				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) 신설공사			
[1등급] 1200억 이상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로 방지막 설				터키·대안공사				- [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] 철도, 궤도시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9			
[2등급] 1200억 미만 ~ 950억 이상					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로 방지막 미설			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				과선교, 승전선로			
[3등급] 950억 미만 ~ 550억 이상						댐				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				- [특수 및 기타건설공사(단독발주에 한함)] 준설, 조경(조경관련 전문 포함), 택지조성(경			
[4등급] 550억 미만 ~ 400억 이상						택지개발				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				정리포함),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(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)			
[5등급] 400억 미만 ~ 220억 이상						기타 토목(하천 등)								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			
[6등급] 220억 미만 ~ 130억 이상						주택(재개발, 재건축)								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, 2022.6.2.)			
[7등급] 130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						주택(신축)								□ 수익계약 시 1차 낙찰률, ()은 2000.7.31.이전 (‘정부입찰계약직행기준’ 제9조)			
7등급 미만						주택 외 건축								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					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							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			
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사공 시						*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528호, 2018.8.30.)								- 추정가격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			
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19-244호, 2018.12.20.)						. 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영양방지사설 설치·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고 표준 시정당량, 표준품준 등에 의해 산출											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. 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훈련비 등 설계사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산											
[건강보험료]	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[연금보험료]													
(직노) x 3.545		(건강보험료) x 12.81		(직노) x 4.5													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																	
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													
[퇴직금제부금비]																	
(직노) x 2.3													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																	
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율 적용											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											